

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 불가자 공고

(공고기간: 2024.04.15.~2024.04.30.)

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 교부불가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급 공고하오니 아래 대상자는 2024.05.01. ~ 2025.04.30.까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의 사진 1매(3.5cm×4.5cm),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 에서 발급한 증명서 (사진 부착된 것이어야 함), 증명서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 이상의 동일세대원·직계혈족·형제자매와 동행하여 서대문구 내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04월 15일

홍제제3동장 

연번	성명	발급기간	주소	비고
	생년월일	공고사유 / 공고일		
1	정**	2024.05.01.~2025.04.30.	서대문구 세검정로4가길 (홍제동)	
	2007.04.16	폐문부재 주민등록증발급통지 불능/2024.04.15.		
2	이**	2024.05.01.~2025.04.30.	서대문구 세검정로 (홍제동)	
	2007.04.03	폐문부재 주민등록증발급통지 불능/2024.04.15.		

※ 위 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(담당자: 박정윤 문의전화 02-330-8422)